

## 2) 노동형태

앞에서도 잠시 언급한 것처럼 조선 후기에 이르러 수공업장에서 노동형태의 변화, 즉 부역 노동에서 고용노동으로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농업에서도 고용노동이 실시된다. 고용노동은 임노동·고지노동(雇只勞動)·고공노동(雇工勞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sup>1)</sup>

먼저 임노동에 대해 살펴보면, 물론 근대 자본주의사회에서의 그것과는 일정한 거리가 있다. 이러한 임노동제는 조선 후기 농민층 분해라고 하는 일정한 사회경제적 기반 위에서 성립되었다. 그 결과 영세빈농층이나 무전무전(無田無佃)의 농민층을 배출하게 되었고, 이들 계층은 자기의 노동력을 상품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시기 농촌사회는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력을 상품화할 수 있는 인력자원이 광범위하게 성립되고 있는 셈이었다.

이러한 사정과 관련하여 임노동제의 성립을 광범위하게 지원하고 있는 것은, 국가 공공사업에서의 노동에 대한 대가 지급의 전반적 추세가 임금제의 경향을 취하고 있는 일이었다. 가령 수리시설이나 치도공사 등 법제상 규정 외의 부역노동에 농민들이 동원되면 정당한 임금이 지불되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농가의 고용임금보다도 많을 때가 있었다. 이러한 양상 때문에 농업노동에서도 임금노동의 형태가 자연스럽게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러한 노동형태를 가장 적절하게 이용한 것은 지주층이나 부농층이었다.

당시 임노동층은 경작을 하거나 김매는 일에 고용되어 '계일취식(計日取食)' 하는, 즉 노동한 일 수에 따라 그 임금을 받아서 살아가는 무전농민층이 많았다. 이러한 계층은 농촌사회의 분해가 심화되면 될수록 더욱 늘어나고 있었다. 이들 무전농민들은 농촌에만 집착하지 않고 도시로 진출하여 상고(商賈)를 업으로 하기도 하고 도시의 노동자가 되기도 하였으며, 광산으로 진출하여 광산노동자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은 농촌에 그대로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이들 농민층은 지주층·부농층 등에 의해 주로 고용되는데, 단지일 내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이양의 시기, 혹은 이양 후에 전개되는 제초작업에 주로 동원되었다.

그리고 앞에서 잠시 언급한 것처럼 두레와 같은 공동노동에 의해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해결하는 농민층도 존재하지만, 임노동을 이용하여 농업경영을 하는 농민층도 다수 존재한다. 18세기 전반 호서지역의 전작농민들의 농업노동관계를 국왕에게 보고한 박문수는 “불과 10두락지의 토지를 빌려 경작하는 농가에서도 세 차례의 김매기, 한 차례의 벼베기, 한 차례의 타작에 소요되는 노동력이 연 50명이나 되었는데, 이러한 노동력을 임노동력으로 충당하고 1명당 3승의 세량미와 5분전의 고가(雇價)를 지불하고 있다.”<sup>2)</sup>고 하고 있다. 그리고 18세기 말 강원도에서는 목맥 2두락을 파종하는 데 불과한 소규모의 차경지에서도 고가를 지급하는 임노동으로써 이를 경작하고 있다. 이를 보아 영세농민층도 임노동에 의존하는 경우가 있었다.

임노동의 고가는 시기·지역 등에 따라 유동적이었을 것이지만, 19세기 중엽에는 1부(夫) 1일(日)의 고가로 조 1두가 지급되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 농업경영에서 임노동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측면이 많았기 때문에, 임금을 지불하고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다면 제대로 농업경영을 할 수 없었다. 특히 농업노동 가운데서도 힘든 노동에 대한 임금은 다른 노동에 비해 훨씬 많았다. 그 중 고가가 가장 비싼 농업노동은 여경(犁耕)노동이었다. 조선시대 한전이건 수전이건 파종을 위해서는 2차의 여경이 필요한데, 농우의 소유자는 적었

1) 金容燮, 「朝鮮後期の 經營型 富農과 商業的 農業」, 增補版 朝鮮後期 農業史研究(2), 일조각, 1990, 325~349쪽.

2) 備邊司謄錄』卷82, 英祖 3年 10月 22日.

으니 그 고가는 고액일 수밖에 없었다.

둘째, 고지노동은 경작과정에 필요한 여러 노동단계 중에서 일부 또는 전 과정의 작업을 농업생산자가 연말연초에 미리 예약함으로써, 임노동자로 하여금 청부경작케 하는 관행이었다. 이러한 고지노동은 17·18세기에 성립되는데, 일제시대 조사에 따르면 호남의 경우 300년 전에 성립되었다고 한다.<sup>3)</sup> 따라서 순천지역에도 고지노동이 존재했을 가능성은 있다. 그것의 시행은 이 시기 수전농업의 발달, 이양법의 보급과 깊은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즉 농법의 전환으로 이양기의 시기가 더욱 급해지므로, 농업생산자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이는 고용자와 피고용자 사이에 나타나고 있던 계급적 모순을 해결하는데도 일정한 도움이 되었다.

고지노동에서 고용주는 고지주 또는 고지주인이라 하였고, 고용자를 고지군이라 하였다. 고지주는 대체로 지주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임에 비해, 고지군은 농촌사회의 분해작용으로 최하의 계층으로 전락하여 노동력을 팔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몰락농민·영세빈농층이 주였다. 일제시대 조사에서 이들은 10~20명 단위로, 단체로 조직되었다고 한다. 또한 경작과정 중에 이양이나 김매기 등의 일정한 작업과정을 도급으로 청부를 맡아 수행하는 일종의 청부경작자이다.

따라서 이들 계급 사이에는 경제적 고용관계가 유지되었고, 신분적 예속관계가 있을 수 없음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그런 점에서 후대에 이르러서는 이 고지노동을 근대적인 노동제도로 파악하기도 하였다.<sup>4)</sup> 고지노동의 임금은 지역·작업시기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차이가 있겠으나, 대체적으로 개별노동의 임금보다 저렴하다. 그 고가는 1석락지를 20명이 이양하고 조 2석(40두)을 받고 있으며, 서역(鋤役)도 마찬가지로였다. 만약 이때의 고지노동에서 고가를 고지군 모두에게 평균으로 분배하는 것이었다면, 1명당 1석락지의 이양가나 서역가는 각각 조 2두가 되는 셈이었다.

셋째, 고공노동을 살펴보면 고공에는 장기·단기고공으로 나눌 수 있다. 장기고공은 조선 전기 이래로 전형적인 고공으로서, 수년간 또는 평생을 주가(主家)에 예속되었다. 이러한 고공은 비부(婢夫)로서의 고공, 그의 처가 고주와 예속관계이거나 기세수양자(飢歲收養者)로서의 고공, 기아상태에서 부자에게 구조되고 그 대가로 고용됨으로써 구성되었다. 그런 점에서 이들은 임노동층이나 단기고공과는 달리 그 고용주와의 사이에 특수한 사정이 개재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인격적으로 대등한 관계일 수 없고 강한 지배예속관계가 유지된다. 그러나 이러한 고공의 형태는 여러 가지 사회 여건상 점차 줄어들어 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단기고공은 농번기에 계절적으로 고용되는 노동자로서, 이들은 본질적으로 임노동층과 다를 것이 없었다. 그들은 고용주에게 신분상으로 예속되는 존재가 아니라 자유인이었으며, 따라서 언제나 현재의 고용주를 떠날 수도 있고 다른 고용주에게 새로 고용될 수도 있었다. 설혹 그들이 노비신분이라 하더라도, 신분상으로 주종관계가 아닌 타인에게 단기고공으로 고용되었을 때에는 고용주에게 신분적으로 예속될 필요가 없었다. 즉 그들은 노동력만을 상품화하는 존재였다. 단기고공은 이와 같이 하나의 임노동자였으며, 어디에서나 일을 할 수 있었다.

임노동적인 성격을 가진 단기고공은 조선 후기에 이르러 임노동층이 형성되는 것과 병행하여 성립되었지만, 발전 정도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가장 일찍 발달한 지역은 서북지역과 관북지역이었다. 양란기에 서북지역에서는 “입작인(속칭 고공)이 반인데, 입작인이 이래

3) 朝鮮總督府, 『朝鮮의 小作慣行(하)』, 1932.

4) 久間健一, 『朝鮮農業의 近代의 樣相』, 1935.

이거(移來移去)가 임의로 행해진다. ... 북도 또한 그렇다.”<sup>5)</sup>고 하였다. 이처럼 일찍 임노동층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은 양란기라는 특수성도 있겠지만, 이 지역에 양반과 노비가 적은 사회 구성상의 특수성도 있었다.

남부지역은 17세기 중엽까지만 해도 아직 고공노동이 일반화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17세기 후반, 정부에서 단기고공을 장기고공 등과 구분하고 있었고, 1783년(정조 7)에는 정부에서 그 법적인 지위를 논하는 것<sup>6)</sup> 등을 볼 때 단기고공이 보편적으로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8·19세기 여러 가지 법적인 제도정치 속에서 임노동제의 발달과 관련하여 단기고공이 일반화되고 있었다. 이는 농업에서 주·노 간에 존재하는 계급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유리하였기 때문에 활발하게 이용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이무렵 농민층의 분해와 신분제의 동요가 격화되고 있었던 사회경제적 요건은 임노동제의 일반화를 촉진하였다.

따라서 조선 후기 농촌사회, 순천지역에서의 임금노동에 의한 농업경영은 점차 일반화되는 추세 속에 있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농업뿐만 아니라 어업·수공업 등의 산업구조에서도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그리고 개항기, 일제시기에 임금노동은 더욱 발전하였다.

---

5) 『仁祖實錄』卷9, 仁祖 3年 6月 己亥.

6) 『秋官志』第3編, 考律部 定制 雇工.